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1. 30 선고 2023가단707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자산관리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0. 20.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2. 10.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위 1.항 기재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3. 4. 11. 접수 제249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2. 9. 7. D 주식회사로부터 위 D이 C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수하고(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2023. 6. 1.경 C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양수금 채권금액은 2023. 6. 9. 무렵 19,193,614원(= 원금 9,286,460원 + 9,545,034원 + 비용 362,120원)에 달한다.

다. E은 2022. 10.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및 C, F, G 외 1인이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다.

라.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2. 10. 22. 피고, F, G 등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5분의 3 지분, F, G이 각 5분의 1 지분을 공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 등은 2023. 4.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5분의 1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행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5분의 1 지분(피고 지분 5분의 3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다선

별지